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방 송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「방송법」이 개정 「방송법」이 개정(제18866호, 2022. 6. 10. 공포, 12. 11. 시행)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령으로 위임된 신고 절차 등 구체화

3. 주요내용

- 기술중립서비스 신고 절차 등
 - 기술중립서비스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술중립서비스 설명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처리 기간인 7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
 - 별지에 기술중립서비스 신고서(19호의4) 서식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4(기술중립 서비스의 신고) 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신고서에 기술중립 서비스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현 행	개 정 안
[신설]	제7조의4(기술중립 서비스의 신고) ①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서에 기술중립 서비스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.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

